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85

발의연월일: 2024. 9. 9.

발 의 자:복기왕・이연희・정진욱

정성호 • 한민수 • 윤건영

염태영 • 이재정 • 민홍철

박용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장과 통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장·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각기 다른 임명 및 지원 체계를 두고 있어, 이장·통장 운영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법률에 이장·통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임무와 임명에 관한 사항과 수당 지원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이장·통장에 대한 안정적인 업무 수행에 이바지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4절에 제1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4조의2(통장 및 이장) ①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 ② 통장 및 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주민의 신 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 임명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장·통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통장 및 이장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신 설></u>	제 34조의2(통장 및 이장) ①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통장 및 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 임명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장・통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④ 통장 및 이장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u>으로 정한다.</u>